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~9



제1529호 2009. 3. 19.

규 칙

제58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

인사발령

일반직 9급 공무원 신규임용 8
 행정직 공무원 승진 임용 8
 행정직 공무원 복직 9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
 D-2일 편집·교정 →
 D-1일 편집·교정 →
 D일 발간

- ▶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


규 칙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09년 3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

1. 개정이유

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강화 및 실천 가능한 세부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규정 신설

-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(안 제7조)
 -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·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
- 행동강령 우수 실천 표창 및 포상 근거 마련(안 제21조)
 -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 및 포상 근거 마련

나. 부작위 의무 강화 및 실천 범위 확대

-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강화(안 제5조)
 - ‘지연·혈연·학연’외에 ‘종교’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 금지 및 구민고객의 권리 보장 등
- 금전의 차용금지 등 범위 확대(제9조)
 -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,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
- 공용물의 사적사용·수익의 금지대상 확대(안 제10조)
 -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사용 금지
- 금품 등 수수행위 제한 강화(안 제11조의2)
 -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금지

다. 규정의 합리적 조정

-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의 범위 조정(안 제15조)
 - 공공기관 요청 및 공무원 등의 대상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
- 경조사 통지 의무의 합리적 조정(안 제16조)
 -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허용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부패방지법」”을 “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조·제6조제2항·제9조제2항·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·제13조제3항·제15조제1항·제17조제2항 및 제3항·제18조제1항·제20조 제1항 및 제2항·제21조제5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조·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4호, 제5호·제4조·제6조제2항 및 제4항, 제5항·제10조제1항·제9조제2항·제11조제1항, 제2항 본문 및 단서·제12조 제2항 및 제3항·제13조제1항 및 제2항, 제3항·제15조제1항 및 제3호·제17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, 제5항·제18조제1항 및 제2항·제19조제1항 및 단서 및 제2항·제20조제1항 및 제2항·제21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호 내지 제5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3호·제6조 제4항·제11조 제3항·제12조 제2항·제15조 제1항 제1호·제17조제3항·제18조제2항·제19조제1항·제21조제3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“성희롱 등”을 “성희롱, 음주운전 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·제7조제1항·제8조제1항 및 제2항·제10조제1항 및 제3항·제14조·제15조제2항·제16조제1항 본문·제21조제3항 중 “하여서는”을 “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·제6조제1항·제7조제1항·제8조제1항 및 제2항·제9조제1항·제10조제1항 및 제3항·제13조제1항·제14조·제15조제2항·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·제21조제3항 중 “아니된다”를 “안 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 제목 및 제1항 중 “저해하는”을 “해치는”으로 하고 제3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, 제4항, 제5항·제15조제2항·제17조제4항·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제6조제5항·제18조제1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며, 제6조제3항 중 “아니하거나”를 “안 하거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·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” 를 “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” 로 하며, **같은 조제2항 중** “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” 를 “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과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” 를 “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·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아니하도록” 을 “않도록” 으로 하고, “아니 되며” 를 “안 되며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·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 ” 를 “그렇지 않다” 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1조의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 공무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3조제1항 후단 중 “하여서도” 를 “해서도” 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” 을 “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대해 ” 로 하고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다만,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확인·발급업무 등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. 자신·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된 경우

2. 4촌 이내의 친족(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3.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

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강의,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 임직원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렇지 않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강의, 서울시 산하 투자·출연기관 임직원 및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투자·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구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는” 을 “구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 등은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“신문·방송을 통한 통지” 를 “신문·방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” 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

제17조제1항 중 “서식에 의하여” 를 “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” 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아니하도록” 을 “않도록” 로 하며, 같은 조제4항 중 “의한 보상금 지급 또는” 을 “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” 로 하며, 같은 조제5항 중 “사법기관으로부터 내사 또는” 을 “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” 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매년” 을 “분기” 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규정이 있는” 을 “규정된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 을 “대해서는” 으로 한다.

제2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⑥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우수 실천부서 또는 공무원·투자출연기관 임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사발령

일반직 9급 공무원 신규임용

2009. 3. 16.

중랑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김승준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2	신민정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3	황찬욱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4	장연주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5	조상록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6	신영철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7	이소현	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8	윤보람	지방녹지서기보시보(산림자원)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9	류미연	지방시설서기보시보(건축)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	(신규)	

행정직 공무원 승진 임용

2009. 3. 16.

중랑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(직위)	직급
1	김대준	행정국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를 해제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국 민원여권과장에 보함	행정국 민원여권과 (과장직무대리)	지방행정 주사
2	장재규	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	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	지방행정 주사보

행정직 공무원 복직

2009. 3. 17.

증량구청장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부서	직급
1	이지숙	복직을 명함 행정국 민원여권과 근무를 명함	행정국 민원여권과	지방행정 서기